##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6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서왕진·김정호·이해민

조 국・정춘생・김재원

차규근 • 신장식 • 김준형

박은정 · 강경숙 · 김선민

한창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 부처에서 개별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녹색성장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舊)「에너지기본법」이 현행 「에너지법」으로 변경되었고, (舊)「에너지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녹색성장법」으로 이관되었음.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함에 따라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녹색성장

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등 입법 흠결이 지속됨.

이에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요과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

한 사항

-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 책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8.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9.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④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제8조에 따른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 및 에너지별 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를 "기본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을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 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를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 행여부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제5조(적용 범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법 시3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 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2(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 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 본원칙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 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요과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도 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 책에 관한 사항
-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 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 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 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8.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 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9.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 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에 관 한 사항
- ④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제8조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에 너지별 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 련 계획의 기본이 되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u>「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u>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 4. <u>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u> 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③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u>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
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
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②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u>이용효율 향상을</u>
5. ~ 7. (현행과 같음)
5. ~ 7. (연영과 됱듬) ③·④ (현행과 같음)
에10조(위원회의 기능)
· 1. <u>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u>
<u>행여부 등</u>
<u> </u>